

약정서

대학교 (이하 "갑"이라 함)와 한국통신프리텔(주)(이하 "을"이라 함)은 한국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.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약정은 "갑" "을" 양자 공동으로 "갑"의 대학교 내 특정 장소에 재학생의 편의를 위한 캠퍼스 샵 (Campus #)을 설치하여 양자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본 약정의 특정 장소란 "을"이 캠퍼스샵을 설치할 수 있도록 "갑"이 제공한 대학교내 장소를 의미한다.
- ② 본 약정의 캠퍼스샵이란 "을"이 "갑"의 대학교 내에 제공한 컴퓨터/인터넷시스템 관련 장비 및 부대시설 일체를 의미한다.

제 3조 (관계 규정 준수 등)

- ① "갑"과 "을" 상호 합의하에 설치된 캠퍼스샵에 대한 관리 지침은 본 약정과 관련된 내용에 준한다.
- ② "을"은 캠퍼스샵의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제 3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개별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.
- ③ "을"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·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, "갑"의 면학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.

제 4조 (약정의 범위)

본 약정은 본 약정서와 별첨된 캠퍼스샵 내역표의 내용으로 한다.

제 5조 (약정 기간)

- ① 본 약정의 유효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의 만료 1개월 전까지 "갑" 또는 "을" 중 일방으로부터 약정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약정은 자동으로 연장되며, 약정이 만료될 경우에는 "을"은 "갑"에게 캠퍼스샵에 관한 제반 시설물을 기증한다.
- ③ 전용선로는 기증시 제외되며, "갑"이 전용선로를 지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2장 약정 업무 수행

제6조 (약정 조건)

- ① "갑"은 "을"의 캠퍼스샵 구축을 위해 _____ (약__ 坪)의 장소를 제공한다.
- ② "을"은 "갑"으로부터 제공받은 장소에 재학생 편의 시설인 캠퍼스샵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여한다.
- ③ "을"의 특정시설물은 본 약정서에 첨부된 캠퍼스샵 내역표에 기입된 것으로 하며 제공 시설물의 향상을 위하여 "을"은 "을"의 책임하에 본 약정의 범위 내에서 "을"의 관련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유치할 수 있다.
- ④ "을"은 "갑"의 대학에 설치한 시설물(컴퓨터, 전용선, 비품 등)이 최적의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,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"갑"은 캠퍼스샵에 대해 "을"이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캠퍼스샵이 속한 건물 전체의 안전관리와 전기료 등 일반관리를 제공한다. 또한 캠퍼스샵 구축시 전기용량 증가 등 내부 시설물 공사와 전용회선 설치시 대학 관할구역내의 전용회선 작업을 지원한다.
- ⑥ "을"은 캠퍼스샵 내에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"을"의 이미지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⑦ 또한 "갑"은 "갑"의 행사(축제 및 기타 유사 행사)시에는 "을"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판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7조 (동종업종 약정 체결)

"갑"은 본 약정 체결 이후에 "을"과 동종 사업자와의 유사한 형태의 유치는 금한다.

제 8조 (협의된 홍보 및 서비스 판촉 행위의 허용)

- ① "갑"은 교내에서의 서비스 판촉 행위 및 시설 내 홍보물의 첩부와 비치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. 단, "을"은 서비스 판촉의 수행시 "갑"과 협의를 거친다.
- ② "갑"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의 기기의 수리, 교환, 무선인터넷 등 정보제공, 가입희망고객의 처리 및 인터넷 ON-LINE을 통한 제한된 판매를 허용한다.

제9조 (시설 내 운영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허용)

"갑"은 "을"에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협의된 홍보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운영인원에 대한 인사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.

제 10조 (비밀의 보호)

- ① "갑"은 업무상 알게 된 "을"과의 영업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"갑" "을"은 약정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조건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 3장 기타 보칙

제 11조 (손해 배상)

"갑" "을"은 제6조,7조의 약정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기타 조항 등에 대해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를 일으킨 당사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12조 (약정 조항의 변경 및 해석)

- ① 일방은 본 약정 기간 중이라도 약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"갑" "을"은 변경사항을 정하여 10일전 사전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약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양자 합의한 후 이를 변경 할 수 있다.
- ② 본 약정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약정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할 경우 "갑" "을"은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상 관례에 따른다.

제 13 조 (일반 사항)

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"갑" "을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 14조 (관할 법원)

본 약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기타 한국통신프리텔은 대구대학교내에 캠퍼스샵을 설치하여 성실히 운영할 것이며, PC H/W 및 S/W를 지속적으로 Up-grade하여 재학생들이 캠퍼스샵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.

2000년 월 일



위 "갑"
대학교

교명:
주소:
총장:

515 - 82 - 02
경산시 진량읍 내리리

가 학 외



인

위 "을"

상호: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
주소: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-20
대표이사: 이 용 경 인

